



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

수신자 : 각 시·도조합이사장
(경 유)

제 목 : 「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기간」 개정사항 안내

1.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77조 제2항 및 「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」 제9조 제2항에서는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대상 차량의 검사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, 지난 2025년 1월1일자로 동법 및 규칙이 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.
3. 현재 일부 조합원께서 개정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, 관련 혼선을 방지하고자 주요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4. 아울러, 각 시·도조합에서는 소속 조합원들에게 본 개정사항을 신속히 안내하시어,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= 아 래 =

구분	개정 전	개정 후
정기검사	정기검사의 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“ <u>전후 각각 31일 이내로</u> ” 한다.	정기검사의 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“ <u>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로</u> ” 한다.
관련 근거	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제2항	
종합검사	자동차 소유자가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검사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 “ <u>전후 각각 31일 이내로</u> ” 한다.	자동차 소유자가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검사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 “ <u>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로</u> ” 한다.
관련 근거	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	

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

회 장 안 영



담 당 강 민 구

과 장 서 기 홍

실 장 심 윤 수

협조자

시 행 전세연 제 2025-91호 (2025.8.22)

접 수 ()

우 28166 /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5로 303(국도푸르미르 빌딩, 7층) / www.ktbus.com

전 화 02-792-2916 전 송 02-794-2654 / / 공개